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7
----------	-----

발의연월일 : 2024년 8월 14일

발 의 자 :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이관우, 임현주, 정병기, 정윤주,
진선아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건축과

라. 입법예고 : 2024. 8. 20. ~ 2024. 8.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예정
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건축물
3.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건축물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2.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3.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정보 제공 등 인식제고 방안

제8조(녹색건축 인증) ① 구청장은 각 호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녹색건축 인증 관련 지원을 받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녹색건축물의 조성 자문)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